

16. 벨라루스(Belarus)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56년
- 현행법 : 1992년(연금); 1996년(보험료); 2001년(장례보조금); 2003년(공공 서비스); 2008(직업연금), 2009년 시행; 2016(연금개혁)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제도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 국내에 영구 거주하는 근로자 및 자영자(성직자와 종교기관의 근로자, 협동조합 회원, 농민 등 포함)
 - 특별제도 : 위험직종 종사자, 특정 범주의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군인, 체르노빌 참사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 사회부조 : 벨라루스 거주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사회보험
 - 소득의 1%.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최대 소득월액은 보험료 납부 전월의 전국평균임금의 5배
 - 전국 평균 임금은 859 벨라루스 루블(2018년 5월 기준 943.90 벨라루스 루블)
 - 사회부조 : 없음
- 자영자
 - 사회보험
 - 신고된 소득의 29%.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최저 소득월액은 법정 최저 임금월액, 최저임금월액은 305 벨라루스 루블
 - 자영자가 부담하는 질병·출산 보험료는 장례비의 재원(질병·출산급여재원 참조)
 - 사회부조 : 없음
- 사용자
 - 사회보험
 - 산업분야 및 기업 형태에 따라 다름. 대부분의 사용자는 임금지급총액의

28% 기여.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최대 소득월액은 보험료 납부 전 월의 전국평균임금의 5배

- 전국 평균 임금은 859 벨라루스 루블(2018년 5월 기준 943.90 벨라루스 루블)
- 사용자가 부담하는 질병·출산 보험료는 장례비의 자원(질병·출산급여자원 참조)
- 사회부조 : 없음

○ 정 부

- 사회보험 : 군인연금 비용 및 필요시 보조금
- 사회부조 : 총비용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노령연금(사회보험)
 - 16년 6개월(2025년 20년에 이를 때까지 1년에 6개월씩 점진적 증가)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해 2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61세(2022년 63세 도달까지 1년에 6개월씩 점진적으로 증가) 남자 적어도 5년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 25년 이상인 60세 도달인 남성. 16년 6개월(2025년 20년에 이를 때까지 1년에 6개월씩 점진적 증가)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해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56세인 여성(2022년 58세 도달 시까지 1년에 6개월씩 점진적으로 증가)
 - 고위험 직종 종사자, 전쟁참전용사, 장애아의 부모, 유아기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 5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친,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의 모친의 경우 수급요건이 완화됨
 - 부분연금 : 가입자가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연기 연금 : 연금 연기 가능
 - 상호협정에 의해 급여 해외 지급 가능
- 노령 사회연금(사회부조)
 - 사회보험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고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65세 남자 혹은 60세 여자에게 지급

○ 장애연금

- 장애연금(사회보험)
 - 1그룹(상시 돌봄이 필요한 완전장애) 2그룹(완전장애) 3그룹(부분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고 1년 이상(장애발생시 23세미만일 경우)부터 15년까지의 가입기간(장애발생시 61세 이상일 경우)이 있어야 함.
 - 1그룹,2그룹 장애가 있으나 완전장애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3그룹 장애는 미해당

- 상시 개호 보충금 :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상시 타인의 개호를 받을 경우 지급
- 전문 의료 재활위원회에서 장애 등급 판정
- 장애 사회연금(사회부조)
 - 사회보험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장애 발생시 18세 미만이었던 비근로자에게 지급
 - 전문 의료 재활위원회에서 장애 등급 판정

○ 유족연금

- 유족연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가장이고 사회보험 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수급자격자 : 부양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18세 미만의 손자손녀(학생일 경우 23세, 18세 이전 장애가 있을경우 연령 제한 없음), 가입자의 부모(부모가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했거나 장애자 또는 8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부양 조부모
- 고아 사회연금(사회부조) : 18세 미만(학생은 23세, 18세 이전 장애발생시 연령제한 없음)아동에게 지급
- 장례금(사회보험) : 장례비용 지출자에게 지급. 사망일(어떤 상황에서는 매일로부터 6개월 전에 청구해야 함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노령연금(사회보험)
 - 연금월액은 가입자 평균 월 소득의 55%에 가입기간(남자 25년, 여자 20년)을 초과하는 1년당 평균 월 소득의 1%씩 가산한 값. 고위험 직종 근무기간 10년(여자는 7.5년) 초과 시 초과 1년당 가입자 평균 월소득의 1%씩 최대 20%까지 가산
 - 연금 산출에 사용되는 최저 소득월액은 최저 노령연금월액의 1%
 - 최저 노령연금월액은 마지막 2분기 내 전국 평균 생계비의 25%
 - 전국 평균 생계비는 199.32 벨라루스 루블(2018,2월; 2018년 5월 기준 206.58 벨라루스 루블)
 - 최고 노령연금월액은 972.92 벨라루스 루블
 - 부분연금 : 완전연금 요건 연수에 미달하는 매년의 기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 감액. 부분연금최저액은 최소 노령연금 월액의 50%;

5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최저 노령연금월액의 100%

- 연기연금 : 정상 퇴직 연령후에 연기한 첫해에는 6% 증가, 두 번째 해에는 8% 세 번째 해에는 10%, 네 번째 해에는 12% 다섯 번째 해에는 14% 증가. 1년이 안된 경우는 매 2개월마다 1%씩 증가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전국 평균 임금 증가에 기초해 월별 조정. 최소연금은 전국 평균 생계비 변동에 기초해 분기별 조정

• 노령 사회연금(사회부조)

- 마지막 6개월 내 전국 평균 생계비의 50%
- 전국 평균 생계비는 199.32 벨라루스 루블(2018,2월)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전국 평균 생계비 변동에 기초해 분기별 조정

○ 장애연금

• 장애연금(사회보험)

- 장애 1그룹 :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75%, 장애 2그룹 : 65%, 장애 3그룹 : 40%
- 장애연금최저액 : 장애 1, 2그룹의 경우 노령연금최저액의 100%, 장애 3그룹의 경우 노령연금최저액의 50%
- 최저 노령연금월액은 마지막 2분기 내 전국 평균 생계비의 25%
- 전국 평균 생계비는 199.32 벨라루스 루블(2018,2월;2018년 5월 기준 206.58 벨라루스 루블)
- 부분연금 : 완전연금 요건 연수에 미달하는 매년의 기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 감액. 부분연금최저액은 그룹1장애와 장애그룹에 관계 없이 5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최소 노령연금 월액의 100%; 그룹 2 장애의 경우에는 50%
- 상시개호 보충연금 : 80세 이상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18세 이전 발생 2그룹 장애인, 2그룹 장애 독신자의 경우 최저노령연금의 50%, 1그룹 장애인은 100%

• 장애사회연금(사회부조)

- 1그룹의 경우, 마지막 6개월 내 전국 평균 생계비의 110%;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2그룹의 경우 95%; 18세 이후 장애가 발생한 2그룹은 85%; 그룹3의 경우 75%
- 18세 미만 장애아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전국 평균 생계비의 80~110% 지급
- 전국 평균 생계비는 199.32 벨라루스 루블(2018,2월;2018년 5월 기준 206.58 벨라루스 루블)
- 연금액 조정 : 전국 평균 생계비 변동에 따라 분기별 조정됨

○ 유족연금

• 유족연금(사회보험)

- 수급권이 있는 유족 1인당 사망일전 사망 가장의 마지막 기준임금의 40%, 완전고아는 50%
- 연금최저액 : 노령연금 최저액의 100%, 완전고아의 경우나 독신 모친 사망 시 200%
- 부분연금 : 완전연금 요건 연수에 미달하는 매년의 기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 감액. 부분연금최저액은 최소 노령연금월액의 50%. 5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최소 노령연금월액의 100%; 고아에게는 200%
- 최저 노령연금월액은 마지막 2분기 내 전국 평균 생계비의 25%
- 전국 평균 생계비는 199.32 벨라루스 루블(2018,2월;2018년 5월 기준 206.58 벨라루스 루블)

• 고아 사회연금(사회부조)

- 전국 평균 생계비의 85%가 자격있는 각 아동에게 지급
- 전국 평균 생계비는 199.32 벨라루스 루블(2018,2월;2018년 5월기준 206.58 벨라루스 루블)
- 연금액 조정 : 전국 평균 생계비 변동에 따라 분기별 조정됨

• 장례금(사회보험)

- 사망일전 달 전국 평균 임금이 일시금으로 지급
- 전국 평균 임금은 859 벨라루스 루블(2018년 5월 기준 943.90 벨라루스 루블)
- 연금액 조정 : 전국 평균 임금 변동에 따라 월별 조정됨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와 지역사무소 (local offices)

- <http://mintrud.gov.by>
- 제도 운영

○ 노동·사회보호부(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의 인구사회 보호 기금(Social Protection Fund of the Population,

- <http://www.ssf.gov.by>)
- 보험료 징수, 제도 운영